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울산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1. 20.경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를 다친 바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6호증,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입원환자신상기록에 입원동기는 '근무중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환자구분에는 '질병'으로 표시되어 있고 발병(부상)일시, 지명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 간호기록, 외래환자 진료부 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나) 오히려 공무상병인증명서에 원고가 군 입대 전 교통사고로 척추부상을 당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5. 2. 13. 작성된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약 6개월 전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75. 2. 13. 작성된 병상일지 중 현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ES) 칸에는 원고가 3개월 전 요부염좌를 입은 후, 심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5. 2. 14. 작성된 간호기록에도 3개

월 전부터 원고가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약 4개월 전 방사통 및 좌하지에 저린감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978. 1. 8. 최초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수 있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발생시기가 12월경으로 추정되고 발병시기가 근무 중이며, 발병이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요추에 충격이 갈 만한 외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이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입원환자신상기록에 발병시기가 근무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것에 기초한 것인바,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